

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10조 및 제10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2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) ①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.

관련 법조문	연장기간	분할납부 횟수
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	1년 이내	1년 이내 6회
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	9개월 이내	9개월 이내 4회
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	6개월 이내	6개월 이내 3회

②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

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13-11호, 2013. 5. 6.>

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4-43호, 2014. 5. 13.>

이 고시는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7-48호, 2017. 7. 28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2-00호, 2022. 00. 00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처리기간 : 5일

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 승인 신청서						
지원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기한연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납부					
지원대상	중소제조기업, 피해기업 등 지원대상 유형 작성					
신청인	상 호	대 표 자				
	주 소	전 화 번 호				
	사업자등록번호	통관고유부호				
신청내용						
신고일자	수입신고번호	규격	수량	가격	세액	고지번호
납부기한연장·분할납부 신청사유		* 별지에 작성 가능				
최초 연장기한		년 월 일까지				
재연장받고자하는 기간		년 월 일부터	(일간)			
년 월 일까지						
분납금액 및 납부기한						
횟수	세목	납부기한			금액	
1회		. . .				
2회		. . .				
3회		. . .				
4회		. . .				
5회		. . .				
6회		. . .				
관세법 제10조·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·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위와 같이 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을 승인합니다.		
20 년 월 일				20 년 월 일	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○○세관장 직인		
○○세관장 귀하				귀하		